

대법원 2015. 12. 24 선고 2015다234251 판결 [부당이득금 반환]

전 문

원고, 상고인

최○○

피고, 피상고인

대한민국

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. 7. 17. 선고 2014나2014946판결

판 결 선 고

2015. 12. 24

주 문

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원고(선정당사자)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.

이 유

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,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,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